

원산지 사전심사 제도

01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란?

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는 협정관세 적용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, 관세청장이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회신해 주는 제도입니다.

※ 근거규정: 개별 협정 및 「FTA관세법」 제31조

- ☑ 「원산지 사전심사」는 사전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한-EFTA FTA의 경우 원산지 사전심사와 관련해 규정된 바가 없어 사전심사 신청이 불가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02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대상

원산지 사전심사는 **아래 대상**에 대하여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① 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**원산지에 관한 사항**
- ②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**품목분류·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**
- ③ 해당 물품의 생산·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**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**
- ④ 해당 물품에 대한 **관세의 환급·감면에 관한 사항**
- ⑤ 해당 물품의 **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**
- ⑥ **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**

※ 근거규정: 「FTA관세법」 제31조, 동법 시행령 제37조

- ☑ 협정마다 사전심사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,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해당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☑ “품목분류·가격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”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사전심사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원산지 사전심사 제도

03 원산지 사전심사 활용법

원산지 사전심사 활용법

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,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, 수입 시 **안정적으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**,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관의 사후 원산지 검증에 따른 추징 리스크를 **완화**시킬 수 있습니다.



원산지 사전심사 활용 사례

사례① 다국적 식료품 유통기업 A社

- 한-미 FTA 중 제20류 식료품은 타 협정과 달리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 엄격하여, 이에 대한 해석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

새로운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물품의 제조공정이 한-미 FTA에서 규정하는 공정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여 수입물품이 한-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받아 협정 관세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

사례② 국내 석유화학회사 B社

- 아세안 현지공장에서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폐촉매를 백금 등의 원재료 회수용으로 국내로 수입하기 이전에 한-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여 원가 절감 및 자원재활용 효과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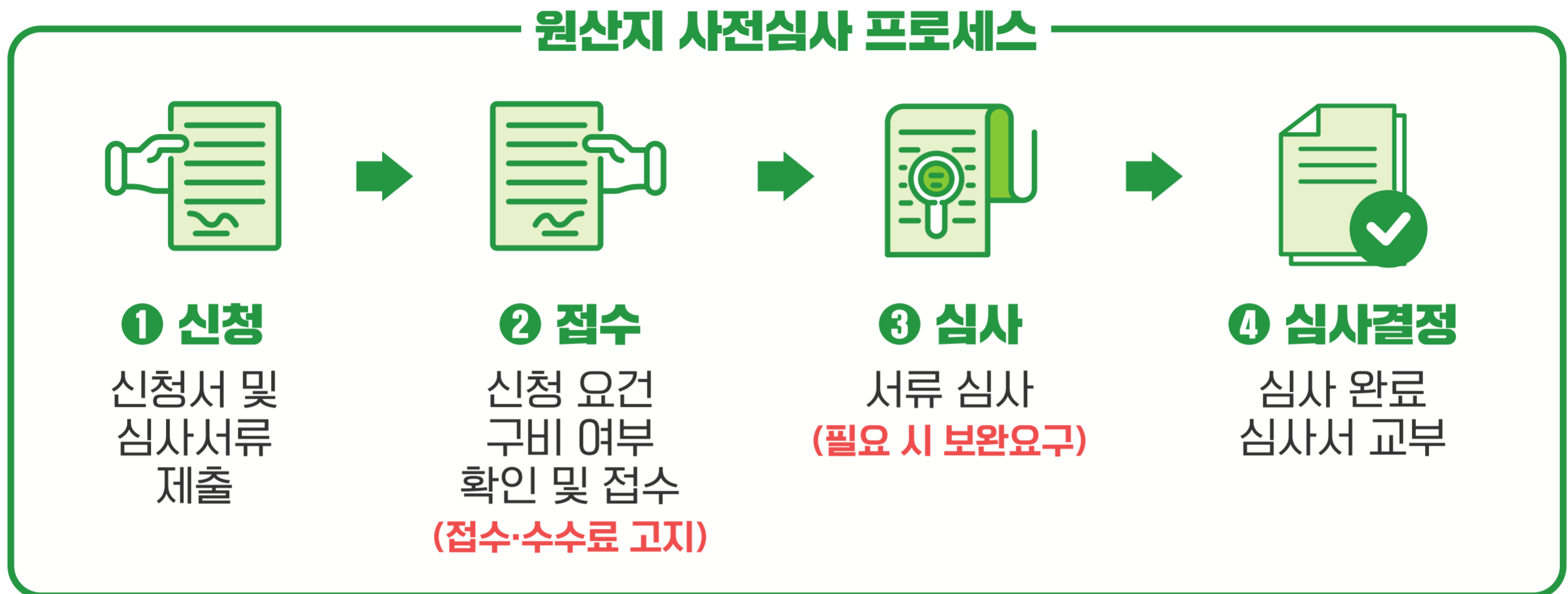
사례③ 국내 금속가공회사 C社

- 한국에서 생산한 원재료를 미국에서 추가 가공하여 수입하는 제품에 대하여 한-미 FTA의 누적기준*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협정상 원산지상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아 보다 안정적으로 협정관세 적용 효과를 누리

* **누적기준**: 상대국의 원재료를 이용해 물품을 제조한 경우, 그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

원산지 사전심사 제도

04 원산지 사전심사 진행절차



1 [신청단계] 신청인은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서류 제출은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, 서면, 우편,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.

[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 필요서류]

- 가. 사전심사신청서 (「FTA관세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)
- 나. 원재료내역서·공정명세서·원가계산서 등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·품목번호·가격 및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* **우 편** |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,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원산지검증과(우 35208)
- * **이 메 일** | originminwon@korea.kr
- * **UNI-PASS** | 전자신고 ➡ 신고서작성 ➡ FTA ➡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

2 [접수단계] 신청내용의 ① 협정·국내법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 대상 여부, ②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와 ③ 현행 법령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, 신청내용을 접수하고 물품당 3만 원의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고지합니다.

【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반려 대상】

- 가. 수입신고 후에 사전심사가 신청된 경우
- 나.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협정에 대해 신청한 경우(한-EFTA FTA)
- 다.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
- 라.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마.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「FTA관세법」 제17조~제19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
- 바.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·심사청구·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


☑ **반려대상에 해당되는 경우, 사전심사를 신청하여도 접수가 되지 아니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려대상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미리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**

- ③ **【심사단계】**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신청내용의 심사가 진행됩니다. 서류 미비로 인해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, 신청인은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- ④ **【결정단계】**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(서류 보완요구로 인한 보정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)에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.

05 원산지 사전심사 내용의 변경

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,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.

- ①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 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
- ②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,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
- ③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
- ④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·심사청구·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

※ 근거규정 : 「FTA관세법」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39조